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2021.01.22. 제정 2021.07.23. 일부개정
2022.02.24. 일부개정 2022.11.16. 일부개정
<인재양성팀>

1. 강의료, 강연료 지급기준

등급	대상(전,현직)		지급상한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1시간기준
일반 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C-level) ○ 전문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노무사, 기술사 등 ○ 대표 컨설턴트 ○ 시민단체 대표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또는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30만원
일반 2급	○ 대학(교) 강사, 연구교수 등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석사학위 소지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 팀장급 실무책임자 ○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20만원
별도 기준	○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 등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온-오프라인 강연(청중 100명 이상), 대형 행사, 국제 학술대회, 포럼 등의 강연자 ○ 전체 구성원 또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 ○ 사전 협의 및 사유서 제출 필요		회당 100만원

가. 해당 프로그램 주관 부서는 위의 별도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 세부안과 별도기준 적용 사유서를 대학원혁신본부에 제출한다. 대학원혁신본부장은 이를 검토하여 별도기준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을 승인하고, 이를 대학원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강의시간이 최초 1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 단위를 기준으로 시간당 강의료의 50%씩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강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강의료의 50%를 지급한다.

라. 해당 프로그램 주관 부서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의 기준과 상이한 자체 지급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 세부안, 자체 지급기준 및 자체 지급기준 적용 사유서를 대학원혁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마. 학술행사 참가자는 학술행사에 토론자, 패널, 사회자 등으로 참석하는 인원으로 정의한다.

바.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 2급 지급상한액의 70%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자문, 상담료 지급기준

등급	지급상한액	비고
	1시간기준	
일반 1급	15만원	○ 필요한 경우 1)
일반 2급	10만원	
별도 기준 적용	25만원	

- 1) 해당 프로그램 주관 부서는 위의 별도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 세부안과 별도기준 적용 사유서를 대학원혁신본부에 제출한다. 대학원혁신본부장은 이를 검토하여 별도기준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을 승인하고, 이를 대학원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

3. 심사료 지급기준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심사료	서면 심사수당	건당 2만원1)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2)

- 1) 서면 심사수당의 경우, 지급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액 기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할 수 있다.
2) 발표 심사수당의 경우, 1시간 이하의 발표의 경우, 발표시간에 따라, 감하여 지급 할 수 있다.

4.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 상한액	지 급 대 상	비 고
원고료	2만원	○ A4 용지 1매(250단어) 기준 ○ 파워포인트 원고 4개 슬라이드 기준 ○ 200자 원고지 3.5매 기준	○ 기존 저작물 복사, 기존 자료의 단순편집 등 재집필 원고에 대하여는 지급불가 ○ 목차,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제외 ○ 파워포인트용 원고는 제외

5. 기타 원고료 지급 기준

구분	기준	지급상한액
기존 원고를 활용한 수정안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원고료 지급상한액의 50% 지급가능
	70% 이상 수정	원고료 지급상한액 100% 지급가능
A4 용지 1/2 이하의 대본 및 스크립트	20줄 기준 1매로 환산	원고료 지급상한액 100% 지급가능

- 가. 유사도 검정 프로그램을 활용, 유사도에 따라 기준 설정
나. 교과목 개발 및 수정에 따른 원고에 한하여 집행 가능

6. 번역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상한액	비고
번역료	한국어→외국어	장당 50,000원 이하 A4 1매 기준 (250단어)
	외국어→한국어	장당 30,000원 이하 A4 1매 기준 (250단어)
	외국어→외국어	장당 70,000원 이하 A4 1매 기준 (250단어)

- 가. 파워포인트 원고 슬라이드 4개당 A4 1매 환산
나. 전문가의 소속기관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다. 전문업체와의 용역계약 등으로 번역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집행 가능

7. 국외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상한액	비고
	1학기 기준	
인문사회계	4,000\$	○ 교수, 책임급 연구원(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3학점 기준 15주 강의 기준
이학공학계	5,000\$	
별도기준 적용	○ 필요한 경우1)	

1) 해당 프로그램 주관 부서는 위의 별도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 세부안과 별도기준 적용 사유서를 대학원혁신본부에 제출한다. 대학원혁신본부장은 이를 검토하여 별도기준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을 승인하고, 이를 대학원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

가. 한국을 방문하여 실제로 체류할 경우 working day를 기준으로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온라인 수업도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회의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상한액	비고
	1회 기준	
회의수당	20만원	○ 총장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위원회에 한해 지급 ○ 본교 외부인력에 한해 지급 (내부인력은 지급하지 않음)
회의식대	3만원	○ 회의에 참석한 인원내 한함 ○ 구체적인 내역이 표시된 증빙 첨부

가. 회의비 집행시에는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9. 교통비 지급기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장하는 강사가 2시간 이내 위촉된 경우 강사료를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0. 여비 지급기준

가. 본교 여비규정을 따른다. 단, 본교 여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을 따른다.

나.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하는 행사나 회의에서 숙식을 제공할 경우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